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가단52089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A

변론 종결2023. 5. 11.

판결 선고2023. 5. 2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1. 12.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3. 접수 제2457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등

- 1) 원고는 2021. 6. 24.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보증금액을 95,000,000원, 보증기한을 2022. 6. 24.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갑 제2호증, 보증번호 D, 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다.
- 2)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채권의 집행 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2항).
- 4)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증서를 토대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9,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등

B는 2021. 12. 2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2022. 5. 24.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95,457,509원(= 원금 95,000,000원 + 이자 457,509원)을 지급하고, 미환급보증료 80,680원을 회수처리 하여 대위변제 잔액은 95,376,829원(= 95,457,509원 - 80,680원)이 되었다. 원고가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827,000원이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은 2020. 6. 1.부터 연 8%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21. 6. 24.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보면, 2022. 1. 31. 폐업처리 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1. 12. 22.로부터 약 한 달 뒤로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될 무렵 불과 약 한 달 뒤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만큼 위 무렵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위 폐업일로부터 오래지 않아 원고는 2022. 5. 24.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95,457,509원을 지급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는 B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을 취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앞서 본 증거에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의 원고에 대한 기초사실 다.항에서 살펴 본 액수의 연대보증채무는 제2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주식회사 E,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으로 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는데, B가 주식회사 E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④ B와 피고는 부자지간인 점, 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의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일반적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의사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B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으로 보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이상, B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므로,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의 목적물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였더라도 채무자가 목적물을 양도하기에 앞서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잔존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게 되었다면 목적물의 양도로 목적물의 가액에서 잔존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이는 채무자의 출재에 의한 피담보채무의 일부 변제가 양도계약 체결 후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08792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전경세

별지